

2020년에 도달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용규 보좌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

차례

요약	1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2
1.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	2
2. 최저임금의 실태와 수준	6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선순환	9
1. 최저임금 제도의 입법취지	9
2. 침체된 한국 경제의 타개책 : 최저임금 인상	9
3.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증대	10
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	11
5.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감	12
2016년 최저임금 8,000원	13
1. 임금은 결국 정치다.	13
2. 주요 국가들 모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
3. 정부새누리당도 이미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	14
4. 2020년에 도달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15
참고문헌 Reference	17

-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법 결정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단신근로자 기준보다 가구원을 고려한 생계비를 계상해야함.
 -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2015년 8,019원)를 기본급으로 적용중임.
 - 선진국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절대액이 높지 않고(OECD 34개국 중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 포함 시 24위), 이명박 정부 이후 낮은 인상률이 고착화됨.
-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선순환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는 않음.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지역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비교 분석된 결과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적정 하도급 단가를 보장할 의무를 저야 하는 경제민주화의 문제임.
 - 임금주도 성장 프로젝트에서 보듯, 임금 비중이 하락하면 총 GDP가 감소하게 됨.
 - 민간소비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확대를 꾀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2016년 최저임금 8,000원
 - 노동자의 기본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
 -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 우선 시중노임단가인 8천원을 1단계 목표로 인상하고, 가구원 생계비 기준 1만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실천에 나서야 함.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규정함. 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야 함. 이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시 항목별률 고려해야 할 자료를 예시로 들고자 함.

1) 근로자 생계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보고서(단신근로자),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으로 변경됨), 법원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등 다른 대상자와 다른 값의 생계비를 계상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 용역보고서 : 월 1,506,179원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한국통계학회 2014. 5)

구분	금액(원)	비중(%)
생계비(A+B)	1,506,179	100.0
소비지출(A)	1,275,362	84.7
식료품·비주류음료	124,118	8.2
주류·담배	25,565	1.7
의류·신발	75,403	5.0
주거·수도·광열	333,042	22.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0,529	2.0
보건	70,815	4.7
교통	168,734	11.2
통신	71,003	4.7
오락·문화	73,609	4.9
교육	11,735	0.8
음식·숙박	202,391	13.4
기타상품·서비스	88,417	5.9
비소비지출(B)	230,817	15.3
조세	38,951	2.6
사회보장	98,314	6.5
기타*	93,552	6.2

- 기타: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귀금속구입 등

- 의원실 독자분석 최저생계비 : 월 1,670,308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최저생계비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 근거하여 직접 산출해 본 1인가구의 생계비는 월 1,670,308원임.

<의원실 독자분석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원)	산출 근거
생계비(총계)	1,670,308	
식료품비	416,531	▶한국노총 2015 표준생계비 : 453,196 ▶민주노총 2015 표준생계비 : 379,866
주거비	420,000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수도권 거주 대학생 평균 월세, 2015년 1월 발표
광열수도비	63,000	국회입법조사처,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 복지정책 방향, 1인 가구 기준(2012년 기준), (수도료 제외)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35,906	▶민주노총 2015 표준생계비 : 122,726 ▶한국노총 2015 표준생계비 : 149,086
피복신발비	92,288	▶한국노총 2015 표준생계비 : 89,476 ▶민주노총 2015 표준생계비 : 95,099
보건의료비	152,583	1인당 연간 국민 의료비 2,198달러(1,831,000원)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분석 자료, 2011년 기준
교육비	-	(교육비 제외)
교양오락비	130,000	국회입법조사처, 여가활동 지표 현황과 시사점, 2014기준(2015년 4월)
교통통신비	120,000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중 1인 가구 교통·통신비(서울거주 3,798가구 대상)
기타소비지출	-	(기타소비지출 제외) - 이미용품, 장신구, 잡비 등
비소비지출	140,000	(사회보험료만 계산) 사회보험료(급여의 8.38%)

-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는 양대 노총 평균값 적용
- 사회보험료는 역산에 의해 산출하였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 발생
- 교육비와 기타소비지출 등은 제외함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 최저임금위원회 용역보고서(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의 생계비는 활용 여부가 불분명함.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평균 가구원수 2.7명(통계청, 2010년)을 책임지는 현실을 감안해야 함.
- 다만, 단신근로자의 경우도 실제 기본 문화생활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액으로는 불가능함. 또한 시급 계산을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하여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상의 금액일 뿐임.

2)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 경제성장률

- 2014년 경제성장률 3.3%, 실질임금상승률 1.1%
- 경제가 성장해도 오르지 않는 임금 =>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단위 :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제성장률	2.8	4.6	4.0	5.2	5.1	2.3	0.3	6.3	3.6	2.3	3.0	3.3
실질임금 증감률	5.5	2.3	3.8	3.4	3.0	-0.2	-0.5	3.4	-4.7	3.0	2.5	1.1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 물가상승률

- 2007~2012년 물가상승률 14.5%, 명목임금상승률 12.4%, 실질임금상승률 2.3%
-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 않는 임금

<단위 : %>

구분	1997Q4 ~ 2002Q4	2002Q4 ~ 2007Q4	2007Q4 ~ 2012Q4
명목임금 상승률	40.2	36.1	12.4
소비자물가 상승률	17.5	15.8	14.5
실질임금 상승률	19.4	17.6	2.3

자료: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3.12)

● 소득분배율

- 2001년~2012년까지 국민소득 6.5%, 가계소득 5.7%, 기업 9.8% 성장
- 2013년 한국 기업저축률 21.5%로 OECD 25개 국가 중 3년 연속 1위
- 2014년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504조, 1년새 40조 증가
- 2013년 법인세 감면액 총 9조3천억원 중 재벌기업 5조6천억원(10대 그룹의 감면액 비중은 55%)

- 소득분배율 변화 추이 =>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연도	1975	1985	1995	1998	2004	2012
노동소득분배율	78.0	75.5	75.9	80.4	70.4	6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국민소득이 6.5% 성장해도, 가계는 5.7%만 성장, 기업은 9.8% 성장

	91-95	96-00	01-05	06-12	91-00	01-12
GNI 증가율	16.4	8.2	7.6	5.8	12.3	6.5
가계소득증가율	16.1	7.5	6.7	4.9	11.8	5.7
기업소득 증가율	17.2	9.4	11.9	8.3	13.3	9.8

(연 평균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 소득분배 악화로 저소득층은 증가하고 중산층은 몰락 => 2008년 24.7%였던 저소득층이 2012년 26%로 증가했고, 중산층은 44.8%에서 41.3%로 감소(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기업의 저축율은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은 쌓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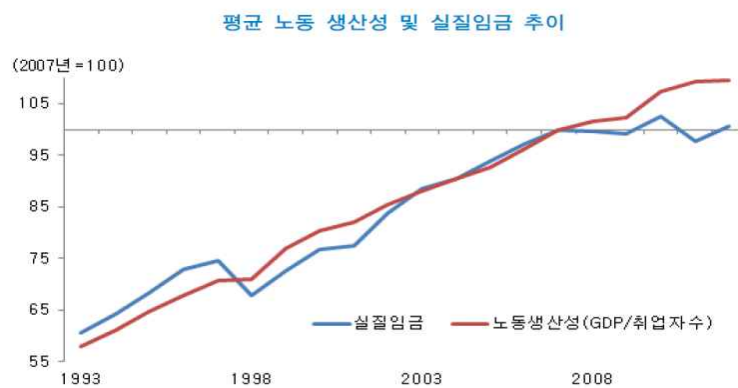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통계’, 2013년 한국 기업저축률 21.5%로 OECD 25개 국가 중 1위. 2007년까지 15% 내외로 10위 정도였지만 2008년 16.8%로 7위로 상승한 이래 계속 올라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함.
- 사내유보금 : 2012년 전체 기업 사내유보금 762조(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년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504조, 1년새 40조 증가(연합뉴스 2015.03.23.)
- 그럼에도 재벌 세금 대폭 인하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인세 감면액 전체 9조3천억원 중 재벌기업 감면액이 5조6천억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 이상 차지, 10대 그룹의 감면액 비중은 무려 55%(2012년 대비 2013년 전체 법인의 감면액 규모는 축소, 재벌 집단은 감면액 상승)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조건

- ① 평균 근속연수 : 2013년 기준, 5.5년으로 OECD 25개 국가 중 꼴찌
- ② 임시직 비율 : 2013년 기준, 22.4%로 OECD 28개 국가 중 24위
- ③ 연간 근로시간 : 2013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28개 국가 중 27위
- ④ 저임금 근로자 비율 : 2012년 기준, 25.2%로 20개 국가 중 19위
- ⑤ 임금불평등도 : 2012년 기준, 4.7배로 23개 국가 중 22위

3) 노동생산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은 정체되고 노동생산성은 꾸준한 증가를 보임. => 2014년 노동생산성(실질 GDP/취업자수)은 2007년에 비해 12.2% 증가, 반면 실질임금은 4.3% 상승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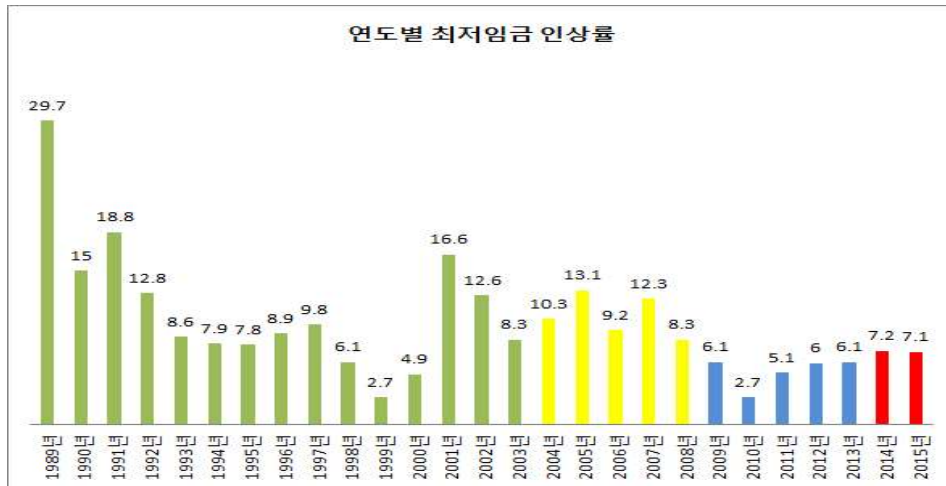


* 실질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실질GDP/전체 근로자수)을 2007년이 각각 100이 되도록 지수화 하여 양자의 추세를 비교한 표(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 2013.12.)

2. 최저임금의 실태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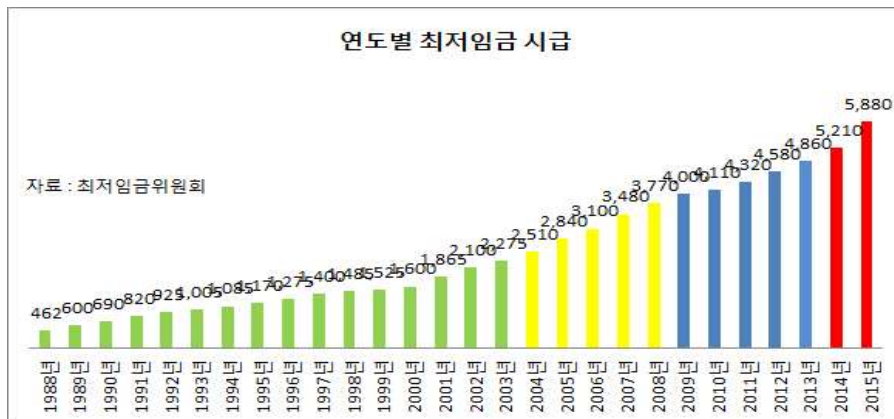
1) 한국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해 왔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이후, 대상자 범위 확대, 실질 최저임금 보장과 결정기준 등을 개정하면서 현행 법률로 규정함.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임금수준 비교

● 국가별 비교

- GDP 국가 순위 : 13위(1조 4,495억 달러,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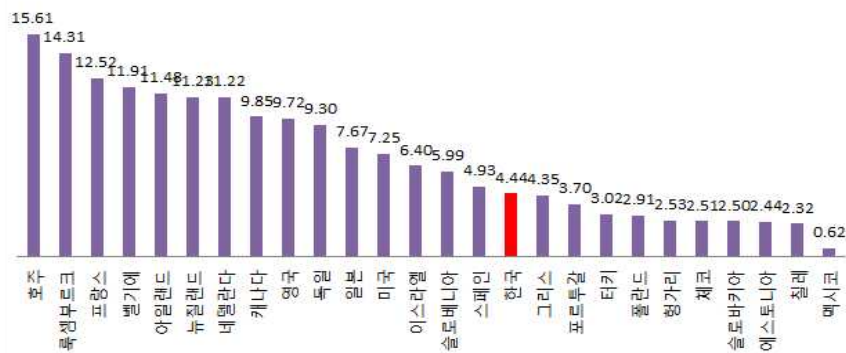
- 1인당 GDP 28,000불 국가의 최저임금액 비교

국가	1인당 GDP	연도	최저임금액(US\$)
한국	28,739	2014	5.2
호주	30,580	2004	15.06
프랑스	28,794	2003	10.98
벨기에	30,039	2003	11.74
아일랜드	27,340	2001	9.83
캐나다	27,335	2003	8.03
영국	27,168	2002	8.56
이스라엘	27,592	2008	6.41

자료 : OECD

- 최저임금 지급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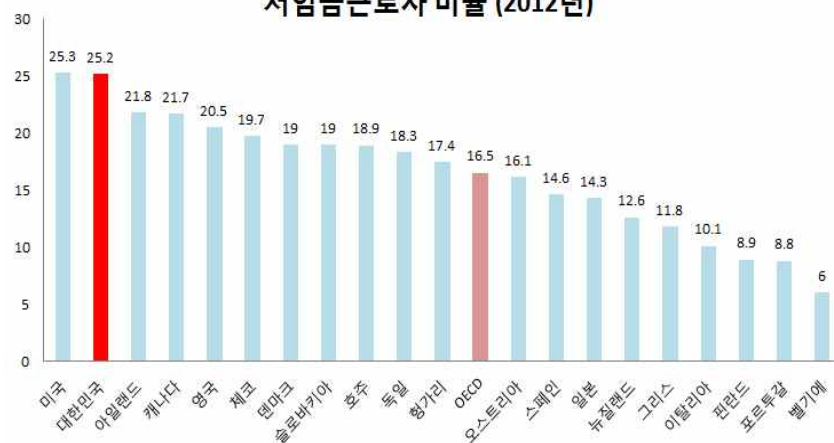


자료: OECD 2014(단위: US\$)

- OECD 34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 실시국가는 26개국임.
-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¹⁾ 포함 시 한국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임.

-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2년)



자료: OECD 2012(단위: %)

1) 핀란드(69%), 스웨덴(67.5%), 노르웨이(54.6%)는 2011년 기준 노조조직률 1, 2, 3위, 오스트리아(95%), 덴마크(90%), 이탈리아(90%)는 산별협약 적용률이 90% 이상,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임. 8개국 모두 고임금 국가.

- 전체 노동자 1,878만명중 453만명(24.1%)이 저임금계층임.(2014년 기준)
- 2012년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율 순위: 미국 25.3, 한국 25.2, 이스라엘 22.1, 아일랜드 21.8, 캐나다 21.7, 폴란드 21.6, 영국 20.5, 체코 19.7, 덴마크 19.0

● 국내 비교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행 :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사회이슈화 되어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함.(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지침, 2011.11.28.)
- 이 때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입찰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기본급으로 적용함.
-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낙찰률 최저하한으로 예정가격의 87.995%로 정하고 있음.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일급/시급) 현황 >

구분	적용률	‘12년	‘13년	‘14년	‘15년
시중노임단가	100%	57,859 (7,232)	60,236 (7,529)	63,326 (7,916)	64,150 (8,019)
	낙찰률 적용	50,768 (6,346)	52,854 (6,607)	55,565 (6,945)	56,449 (7,056)
최저임금 대비 수준	100%	158%	155%	152%	144%
	낙찰률 적용	138%	135%	133%	126%

자료: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의 시설물관리업종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액을 비교함
 - 기계, 전기, 보일러 등 관련 직종 인력은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고, 해당직종이 없는 경우 유사직종 노임 적용
 - (예시) ‘15년 기계정비원: 일급 83,626(시급 10,453원), 전기정비원: 일급 80,807원(시급 10,101원), 보일러조작원: 일급 81,812원(시급 10,227원)
-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 2013년 시급(4,860원)은,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정액급여(시간당 임금)의 34%, 통상임금의 29% 금액에 불과함.(김유선 박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2013에서 인용)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통상임금 50%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순환

1. 최저임금 제도의 입법취지

-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 1조(목적))
-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임금노동자 18,776천명 중 227만명(12.1%)으로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120만명에 달함.(2014. 8)
- 3)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임.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국민경제와 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 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됨.

2. 침체된 한국 경제의 타개책 : 최저임금 인상

- 1) 한국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3%대 저성장 장기추세가 이어짐. 한국은행은 2015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3.8%로 하향 조정함. 이러한 저성장 추세에서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35%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 담배값 인상과 주류 기여분(0.58%포인트)을 제외하면 물가가 -0.23% 하락한 것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 (*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목표(2.5~3.5%)에 못 미치는 1%대 이하의 저물가 행진은 2012년 11월(1.6%) 이후 29개월째 이어짐.) 또한,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소비부진이 지속됨.(*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감소)
- 2)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2014.3.7.) 보고서를 통해
 - 소비부진의 요인
 - ① 가계소득 비중 하락 ② 가처분소득 비중 감소 ③ 평균소비성향 하락
 -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 ① 기회상실 민간소비와 GDP는 연평균 4.9조원, 이로 인해 GDP가 0.5%p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② 기회상실 일자리는 연평균 11.5만개, 이로 인해 고용률이 0.3%p 상승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임금 상승,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마련과 지원책 확대

②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

3) 결국, 침체한 한국경제의 타개책으로써 “임금인상 → 소득 증가 → 민간 소비 확대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3.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증대

1)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은 빈곤구제와 구매력 상승으로 소비 상승,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

* 2013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최저임금정책 보고서] (태국의 경우 하루 300바트로 최저임금 40%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까지 고용 0.6%p, 실질 GDP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2)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현대경제연구원, 2014.3.7.)

● 침체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 증대가 시급함

●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함.

3) 임금주도 성장 프로젝트의 실증적 연구결과

● Onaran and Galanis(2012)의 연구결과: ‘전 세계 이윤 비중의 가감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 임금 비중 감소로 인한 효과를 확인함.

- G20 개별 국가의 이윤 비중이 1% 증가할 때 국가의 수요 구성 요소들(소비, 민간투자, 순수출 등)의 수치상 음수를 나타내어 임금주도 내수체제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임금 비중이 1% 하락하면 G20의 총 GDP는 0.36% 감소함. 이윤주도 경제체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임금 비중이 하락하는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함.

4)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새로 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로 들어가는 한계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

1) 대표적 자영업인 편의점의 경우 본사 수수료율 조정

- 2014년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 총 매출 9조1,808억, 점포수 23,928개소, 점포당 월 평균 매출 31,973,699원, 매출 총이익은 9,592,110원
- 점포당 월 평균 본사 수수료 3,357,238원 (수수료율 평균 35%)
- 수수료율을 35%에서 30%로 5% 조정하면 월 평균 본사 수수료가 2,877,633원으로 인하여, 479,605원 절감. 즉, 최저임금 5,580원(월 116만원)에서 8,000원(월 167만원)으로 인상할 때, 인상되는 임금이 1인당 51만원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직원 1명의 임금 인상액을 감당할 수 있음.
- 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형식의 자영업 사업장에서는 가맹본부(대기업)의 책임으로 최저임금 보전을 가능하게 할수 있음.

2)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내용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소득세법 (홍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세액공제 ※ 조특법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조항 삭제, 소득세법에는 의료비 등 공제 조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장병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한도금액을 법률로 규정 ※ 영세 자영업자(외식업 등)의 세금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조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 인상
하도급법 (강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 시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한명숙, 이상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가맹점을 위한 공익목적의 VAN사(전자금융보조사업자) 지정 근거마련 • 중소기업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인하(시행령 2억이하 1.5%, 2억~3억이하 2% 우대수수료 적용 → 최고한도 100분의 2범위 근거마련)

- 3) 전체 자영업 중 1인 사업장과 본사가 있는 가맹자영업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은 원하는 경우,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 점진적 이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 자영업자들도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인상으로 전체적인 소득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4) 영국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2004년, 2005년에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났고, 가장 많이 오른 2009년에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짐.

5.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감

- 1) 김유선(2011)은 통계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으며, 2000년 이후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함.
- 2) 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사용해서 패널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을 전체 고용으로 하던 청년, 고령자, 여성으로 하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 보고함.
- 3) John Schmitt(2013)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게 대세’ 라고 밝힘.
- 4) 이병화·정진호 외(2008)는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비율과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5~24세 청년층은 유의미하지 않은, 25~54세 중장년층은 유의미한, 55세 이상 고령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고 보고함.
- 5) 김대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임금이 하위 5% 이하인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한 결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만 신규채용 감소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함. 이에 대해 유경준(2013)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지 못 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신규채용 감소효과가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6) 미국의 David Card 교수(버클리 대학)와 Alan B. Krueger 교수(프린스턴 대학)는 최저임금을 4.25 달러에서 5.05달러로 올린 뉴저지주와 그대로 유지한 펜실베이니아주를 비교분석함. 그 결과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펜실베이니아 체인점보다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남. 세계은행도 2013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 냄.

2016년 최저임금 8,000원

1. 임금은 결국 정치다.

1) 폴 크루그먼은 지난 3월 5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노동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은 버터 가격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는지는 단순한 수요 공급 원리 못지않게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장 실험 연구를 통한 광범위한 결론은 최저 임금이 적절하게 상승하는 것은 고용 감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다. 극도의 불평등과 노동자의 몰락은 시장이라는 신이 정한 운명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선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 고 밝힘.

2)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현황

(단위: 천명, %)

조사기간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임금근로자수(A)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미만근로자수(B)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2,086
미만율(B/A)	5.8	8.1	9.4	11.9	10.8	12.8	11.5	10.8	9.6	1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년 8월 원자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통계는 노동자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본연의 취지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줌.

2. 주요 국가들 모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을 심의하여 의결 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장관은 의결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됨.(최저임금법 제8조)

2)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10.10법안’ 제안, 최저임금 10불 시대 주도

- 지난 1월 20일 상하원 합동 국정신년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에 1,6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번 해보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하라” 고 연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임금과 혹독한 근로조건의 대명사였던 월마트가 올해 4월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7.25달러보다 1.75달러를 인상 하겠다는 것이며, 올해에만 한화로 1조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

- 영국 (1993년 폐지된 최저임금 제도를 1998년 재도입)

-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3% 인상된 6.7파운드(약1만 1천원)로 결정(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인상폭은 2008년 이후 최고, 올해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0%로 전망)
- 영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인 120만명

- 일본

- 아베 정권은 ‘잃어버린 20년’ 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돈을 풀어 엔저 효과를 만든 뒤 그로 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월급을 인상시켜 경기침체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구상
-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결정

- 독일

- 2015년부터 거의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8.5유로(약 1만원)의 최저임금제를 적용.
- 고용 감축 우려도 있었지만 경기가 본격적 회복세를 탄 상황이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 우려보다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3. 정부새누리당도 이미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

- 1)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함.
- 2) 또, 최저임금제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함.
- 3)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장관후보자 서면 답변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검토 하겠다’ 며, 기업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필요가 있다’ 고 밝힘. 지난 3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도 ‘올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언급함.
- 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월 5일,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

영 한다' 고 말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4월 8일)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야당의견에 동의 한다' 고 밝힘.

- 5) 정부와 여당의 발언 내용은 '임금이 소비의 원천' 이라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고무적 변화임

4. 2020년에 도달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장의 열매가 고루 분배될 때 성공한 사회가 된다. 민주주의 중흥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번영이 반드시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들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라는 흑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 기업들이 고용 유인을 갖게 되는 번영의 선순환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전략을 규명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 시대이다.”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 2014)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고, 중산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 달러로 높이면 (민간 생산직 및 비관리직)종업원 평균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탄탄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을 줄여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면서 '아린드라짓 두브(Arindrajit Dube), 마이클 라이히(Michael Reich), 윌리엄 레스터(William Lester)의 연구가 여기서 고려하는 정도의 임금 상승이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내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힘.

- 1) 한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적 생계비 규모에 미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소비를 촉진하여 단시간 내에 효과를 냄과 동시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당장은 시중노임단가 금액(8천원)과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정액급여 평균값(16,210원, 김유선 박사)의 50% 금액에 해당하는 8천원 인상이 목표임.
- 2) 특히 2~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국가 경제력에 걸 맞는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함.
- 3)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연 평균 7% 인상)로는 2024년에야 최저임금 1만원 대에 진입하고, 연 평균 10%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2년에야 1만원에 도달함.
- 4) 2016년, 최저임금을 최소 8,000원(43%인상)으로 인상하고
 - 연 평균 7% 인상하면, 2019년~2020년에 1만원 진입,
 - 연 평균 10% 인상하면, 2018년~2019년에 1만원 진입 가능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로드맵>

구분	연평균 7%	연평균 10%	2016년 8,000원	
			연평균 7%	연평균 10%
2015년	5,580	5,580		
2016년	5,971	6,138	8,000	8,000
2017년	6,389	6,752	8,560	8,800
2018년	6,836	7,427	9,159	9,680
2019년	7,314	8,170	9,800	10,648
2020년	7,826	8,987	10,486	
2021년	8,374	9,885		
2022년	8,960	10,874		
2023년	9,587			
2024년	10,259			

참고문헌 Reference

- 국민일보(2015.2.) “작년 편의점 매출 성장세 유지.. 점포 1600개 증가”
- 국회예산정책처(2014)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및 경제적 영향”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0호)]
-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제35권 제3호]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유선(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 김유선(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8.) 결과”
- 김유선(2015) “최저임금 고용효과”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이인영 의원) 토론회 자료]
- 박종규(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 이병희(2014)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2013)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최저임금정책 보고서]
- 이병희·정진호 외(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조세일보(2015.2.) “GS25, 편의점 빅3중 나홀로 순익감소... 속빈강정”
- 최성근(2014)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현대경제연구원]
-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2014)
- John Schmitt(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Onaran and Galanis(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0, Geneva.
-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2014)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5-01

2020년에 도달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발행일 2015. 06. 24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5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2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